

해외 공적연금 개혁동향과 시사점

이슈 분석

최장훈 연구위원

약

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급여를 삭감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등의 연금 개혁이 19 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졌음. 하지만, 일부 국가들에서는 개혁으로 인한 노후소득 감소가 발생하여 급 여적정성 회복을 위해 개혁역전(Reform reversals)이 일어남. 국내에서도 연금의 급여적정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. 소득보장체계의 제도 정비를 통 한 재원의 효과적 운영과 사적연금 강화를 통한 급여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

- 1990년대 이후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상당수 국가들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
 - 과거에는 고령자에 대한 부양이 가족과 지역사회를 통해 제공되어왔으나, 이제는 주로 국가의 연금제도와 의료서비 스를 통해 제공됨
 - 이러한 제도는 고령자와 근로자 간의 소득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, 노인빈곤율이 줄어 들게 됨1)
 - 하지만 상당수 국가에서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연금지출도 빠르게 늘어나, 연금 개혁 없이는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됨2)
- 선진국들은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1990년대 후반 이후 연금 개혁을 실행하였음((표 1) 참조)
 - 재정 불안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은 소득대체율(연금급여) 삭감, 보험료 인상, 가입기간 연장 및 수 급기간 축소 등 다양한 연금 개혁을 시행함³⁾
 - 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삭감한 국가로는 독일, 일본 등이 있음
 - 보험료를 인상한 국가로는 호주, 캐나다 등이 있음
 - 연금의 수급연령을 조정한 국가로는 영국, 프랑스 등이 있음
 - 한국도 두 번의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%에서 점차적으로 40%로 낮추도록 함

¹⁾ Population Council(2004), "Population aging and the rising cost of public pensions"

²⁾ EC(2012), "An agenda for adequate, safe and sustainable pensions"

³⁾ OECD(2019), "Pensions at a Glance 2019: OECD and G20 Indicators"

〈표 1〉 연금 개혁 사례

구분	내용
소득대체율 삭감	 독일: 2001년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%에서 53%로 축소 일본: 2004년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59.2%에서 2020년 50.2%까지 낮추도록 함 한국: 1998년과 2007년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70%에서 40%로 낮추도록 함
보험료 인상	· 호주: 2014년 기업퇴직연금 보험료를 9%에서 9.5%로 인상하였고, 2025년까지 12%로 추가인상 하기로 함 · 캐나다: 9.9%의 보험료를 2023년까지 11.9%로 인상하도록 함
수급연령 조정	· 영국: 2007년 개혁을 통해 수급개시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점차적으로 높이도록 함 · 프랑스: 2009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연금 수급기간의 비율을 일정하게 유 지하도록 함

자료: OECD(2015), "Pensions at a Glance 2015"

- 하지만 상당수 국가는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 개혁 실행 후 노후소득의 감소가 발생함4)
 - 상당수 국가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이루어진 연금 개혁 이후 소득대체율5)의 전반적인 하락을 경험함
 - 핀란드, 그리스, 헝가리, 이탈리아, 멕시코, 그리고 포르투갈은 고소득층의 연금급여를 저소득층보다 큰 폭으로 삭감함
 - 반면, 스웨덴은 저소득층의 연금급여 삭감폭이 고소득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
 - 캐나다와 그리스 등 몇몇 국가들에서는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금액이 개혁 이전보다 낮아졌음
 - 한국도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노후소득의 감소가 예상됨
- 이처럼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혁으로 노후소득의 확보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급여의 적정성 회복을 위한 개 혁역전(Reform reversals)6)이 일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음((표 2) 참조)
 - 2015년 이후 공적 재정상태가 개선되었고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고령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, 일부 국가 들에서는 이전의 연금 개혁을 되돌리는 개혁역전이 일어남기
 - 연금급여에 대한 개혁역전 사례로 스페인과 한국이 있음
 - 스페인은 2019년 재정상태 등에 기초해 연금급여가 연동되는 자동조정장치를 유예함
 - 한국은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국민연금 A값(평균소득액)의 5%에서 25~30만 원으로 높이도록 함
 - 수급연령을 재조정한 국가로 캐나다와 체코 등이 있음
 - 캐나다는 기초연금 수령연령을 67세로 상향하기로 한 계획을 시행하지 않기로 함
 - 체코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65세를 초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, 폴란드도 67세로 높이기로 한 이전개혁의 결 정을 남자는 65세로, 여자는 60세로 낮추었음

⁴⁾ OECD(2013), "Pensions at a Glance 2013"

⁵⁾ 은퇴 이전의 소득 대비 은퇴 이후의 연금액의 비율임

⁶⁾ OECD(2017), "Pensions at a Glance"; OECD(2019), "Pensions at a Glance"

⁷⁾ OECD(2017), "Pensions at a Glance 2017"

〈표 2〉 연금 개혁역전 사례

구분	내용
연금급여	· 스페인: 재정 상태에 기초하여 연금급여가 연동되는 자동조정장치를 유예함 · 한국: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국민연금 A값(평균소득액)의 5% 수준에서 25~30만 원 수준으로 높이도록 함
수급연령	· 네덜란드: 퇴직연령과 기대수명 간의 연계를 중단하여 퇴직연령이 상향되지 않도록 함 · 캐나다: 기초연금 수령연령을 67세로 상향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함 · 체코: 연금 수령연령이 65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· 폴란드: 연금 수령연령을 67세로 상향하기로 한 계획을 남자는 65세로, 여자는 60세로 낮춤

자료: OECD(2019). "Pensions at a Glance 2019: OECD and G20 indicators"

- 해외 사례와 같이 국내에서도 연금의 급여적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.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
 - 주요 선진국의 경우 19세기 후반 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이후 재정위기를 경험하였으나. 우리나라는 제도 도입이 늦어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위기를 맞이하여 재정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 다고 볼 수 있음
 - 또한,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보다도 빨라 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급여수준 을 높이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임
 - 국민연금의 경우, 소득대체율을 40%로 낮추고 수급연령도 65세로 상향하는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 개혁을 실행했 음에도 불구하고 기금고갈시점이 2056년으로 5년 전 전망치보다 4년 당겨짐8)
- 따라서 소득보장체계의 제도 정비를 통한 재원의 효과적 운영과 사적연금 강화를 통한 급여적정성을 확보할 필 요가 있음
 - 우리나라는 재정안정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개혁역전보다는 다층소득보장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
 - 현재 우리나라의 다층소득보장체계는 제도 간의 협력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.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보장확 보와 이를 위한 재원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
 - 제도 간 명확한 역할 설정을 통해. 노후소득원을 다각화하여 재원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음》
 -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 빈곤을 방지하고 퇴직연금을 통해 적정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분함
 - 사적연금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 및 노후소득 제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10)

⁸⁾ 기획재정부(2020), 「2020~2060년 장기재정전망」

⁹⁾ 한국보건사회연구원(2020), 「인구변동과 지속 가능한 발전: 저출산의 경제·사회·문화·정치적 맥락에 관한 종합적 이해와 개혁 과제」

¹⁰⁾ 예를 들면 독일의 리스터연금, 영국의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 등이 있음